

무역보험기금채권규정

제정 : 2010.6.23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무역보험기금채권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원칙) 채권에 관하여 무역보험법, 동법 시행령, 정관, 업무방법서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. 다만,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에 의할 수 있다.

제2장 발 행

제3조(채권발행계획) ① 한국무역보험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발행금액
2. 발행조건
3. 발행 및 상환의 방법
4. 기타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발행계획은 사장이 정한다.

제4조(채권발행방법) 채권은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의 의결을 받아 사모발행을 할 수 있다.

제5조(발행방식) ① 채권은 발행즉시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의 의결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채권의 등록절차는 예탁결제원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채권형식) 채권은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인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,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.

제7조(채권의 상장) ① 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채권의 상장절차는 한국거래소의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발행총액의 결정) ① 실제로 매출 또는 응모된 채권의 총액이 공고된 발행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응모된 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.

② 공모기간 만료이전에 공고된 채권총액이 매진되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발행총액을 확정한다.

제3장 상 환

제9조(상환방법) 채권의 상환은 만기상환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의 의결을 받아 중도상환 또는 매입상환할 수 있다.

제4장 기 타

제10조(일수계산방법) 채권의 이자산정기간, 할인금액 계산 등 채권관련하여 연간일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윤년 등에 관계없이 연간일수를 365일로 한다.

제11조(하부위임)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.

부 칙(제정)

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